



〈〈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〉〉

○ 지원 내용

2025년 청년 신규채용 후 ★ 6개월간 고용 유지 시,

〈기업지원금 1년간 최대 720만원〉

①기업지원금 청년 1인당 월 60만원 12개월 지원

7101	신청기간	6개월(1회차)	9개월(2회차)	12개월(3회차)
기업 (유형 I , II)	지원금	3,600,000원	1,800,000원	1,800,000원
	산정방식	월 60만원*6개월	월 60만원*3개월	월 60만원*3개월

〈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2년간 최대 480만원〉

②청년 인센티브 장기근속시 240만원 2회 지원 ★청년 인센티브 유형Ⅱ(제조업,빈일자리업종)만 가능

청년	신청기간	18개월(1회차)	24개월(2회차)
	지원금	2,400,000원	2,400,000원
(유형 Ⅱ)	산정방식	1년반 근속시 지급	2년 근속시 지급

*기업이 청년에게 유형II 고지

O 사업참여 관할구역

대구광역시	경상북도	
서구, 달서구, 달성군, 남구	고령군·성주군·칠곡군(석적3공단 제외)	

- 기업 자격요건
 -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* 우선지원 대상기업
 - 정규직 채용, 6개월 이상 고용유지, 주 30시간 이상 근로, 4대 사회보험 가입,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
- 청년 자격요건

청년 자격 필수 요건① (모두 해당)

- 채용일 현재 만 15세~ 34세 이하인 자 (군필자인 경우 만 39세로 한정)
- ②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지 않은 청년

 ★ 신규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★ *최초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 정규직 전환자 가능
- ❸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청년 (일용근로자 가능)
- 4 사업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청년
- **⑤** 채용일 기준 재학중이 아닌 자 *방통대,대학원 등 재학, 고등학교 졸업예정 가능 * 대학교 졸업예정 불가능

청년 자격 선택 요건② (1개 이상 해당)

- ① 연속하여 실업 상태가 4개월 이상이었던 자
- **②** 고졸 이하 학력자
- ❸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자
- ◆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·

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· 일학습병행제 이수 이후 최초 취업자

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

- **⑥** 자립지원 필요 청년
- ♂ 대량고용변동신고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
- ❸ 븍힌이탈청년
-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
- ① 최종학교 졸업 이후 해당 사업장 채용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총 12개월 미만인 자

대구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본부

TEL: O53-560-7812(박수빈 선임)/O53-565-8781(손용운 본부장)

*★유형Ⅱ(제조업 외 빈일자리업종), 5인 미만 기업 유선상 문의 *최초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신청 가능